|  |  |  |
| --- | --- | --- |
| **식품 리콜 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12호  <식품 리콜 관리방법>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비징취엔(畢井泉)  2015년 3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 생산경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전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모면하며 대중의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 지는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불안전 식품이라 함은 식품안전 법률·법규에서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과 신체건강 피해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기타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안전 제1책임자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의학, 독리(毒理), 화학, 식품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정보를 취합 및 분석하고 식품안전 리스크 요인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정보를 취합 및 분석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제7조** 식품업계협회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규범을 제정하며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에 따른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등 활동에 대한 사회대중의 감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2장 생산경영 중단**  **제8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 식품임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는 생산경영을 중단할 것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식용을 중단할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 리스크를 방지·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을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집중거래시장의 운영자, 식품경영 매장의 임대자, 식품 전시회의 주최자는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경영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관련 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경영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경영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 식품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경영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불안전 식품이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생산경영자의 통제하에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해당 불안전 식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제3장 리콜**  **제1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자기검사, 대중의 신고와 제보, 경영자 및 감독관리부서의 통보 등 방식을 통하여 그가 생산경영한 식품이 불안전 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식품을 리콜 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리콜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식품안전 리스크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근거하여 식품 리콜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 1급 리콜 : 식용 후 심각한 건강피해 심지어 사망을 초래하였다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24시간 내에 리콜를 가동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리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2급 리콜: 식용 후 일반 건강피해를 초래하였다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48시간 내에 리콜를 가동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리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3급 리콜 : 라벨, 마크에 허위 표시를 한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72시간 내에 리콜를 가동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리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 라벨, 마크에 하자가 있으나 식용 후 건강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하자를 시정하여야 하며 해당 식품을 리콜 할 수 있다.   **제14조** 식품생산자는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자로부터 리콜계획을 제출받은 후 필요에 따라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리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리콜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결론이 내려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자진회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된 리콜계획에 따라 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식품리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구체적인 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2. 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생산차수, 수량 및 리콜 지역범위; 3. 리콜의 원인 및 피해결과; 4. 리콜의 등급, 절차 및 기한; 5. 리콜 통지문 또는 공고문의 내용과 발표방식; 6.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7. 리콜 식품의 처치 조치, 비용부담 상황; 8. 리콜의 기대효과.   **제16조** 식품 리콜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구체적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2. 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생산차수 등; 3. 리콜의 원인, 등급, 시작/마감일자, 지역범위; 4.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와 소비자 반품처리 및 배상 절차.   **제17조** 불안전 식품이 본 성·자치구·직할시에서 판매되는 경우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웹사이트 및 성급 주요 언론매체에 식품 리콜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웹사이트에 발표된 리콜 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야 한다.  불안전 식품이 두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서 판매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웹사이트와 중앙 주요 언론매체에 식품 리콜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8조** 1급 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리콜 업무를 마쳐야 한다.  2급 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리콜 업무를 마쳐야 한다.  3급 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리콜 업무를 마쳐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후 리콜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생산자가 불안전 식품 리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불안전 식품의 매입, 판매를 중단하고 불안전 식품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생산자가 발표한 리콜 공고문을 부착하여야 하고 식품생산자의 리콜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식품경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불안전 식품에 대해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경영범위 내에서 리콜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는 경우 이를 공급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제때에 생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리콜 통지문 또는 공고문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식품에 불안전 문제가 초래되었음을 특별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산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생산자의 파산 등 사유로 불안전 식품을 리콜할 수 없게 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그의 경영범위 내에서 불안전 식품을 리콜 하여야 한다.  **제22조**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는 절차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리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처치**  **제2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생산경영 중단, 리콜 등 사유로 시장에서 회수한 불안전 식품에 대해 보완, 무해화 처리, 소각 등 처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 비식용성 물질, 부패 물질, 질병사 가축·가금 등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한 불안전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즉석에서 소각해야 한다.  즉석에서 소각할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자가 집중 소각처리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집중 소각처리하기 전에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라벨, 마크 등의 식품안전 표준 미달로 리콜된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취한 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보완조치를 소비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불안전 식품에 대한 무해화 처리 후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불안전 식품의 처치방식을 확정할 수 없는 식품생산경영자는 관련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처치해야 한다.  **제28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하는 불안전 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생산차수, 수량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최소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불안전 식품을 발견한 경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생산경영 중단 또는 리콜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 식품일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식품생산경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에 대해 현장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하는 불안전 식품에 비교적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가 끝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제출한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한 조치가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결론이 내려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하여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불안전 식품의 식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다.  **제36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과리부서는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을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관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식품안전 법률·법규에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을 즉시 중단하지 않거나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불안전 식품의 리콜를 가동하지 않거나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경고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39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자의 불안전 식품 리콜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경고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4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13조, 제24조 제2항, 제32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따라 관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벌을 내리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할 것을 명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경고 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2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4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28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따라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 처벌을 내리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 식품생산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로 인해 그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타 법률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주동적으로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조치를 취하여 피해 결과를 해소 또는 경감시킨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의 경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적시에 시정함으로써 피해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제44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7장 부칙**  **제45조** 식품, 식품첨가제 및 기능식품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식품생산경영자의 도매·소매시장 또는 생산가공기업으로 유입된 농산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또는 처치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食品召回管理办法**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12号  　　《食品召回管理办法》已经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9月1日起施行。  　　　　　　　　　　　　　　　　　局长　毕井泉  2015年3月11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食品生产经营管理，减少和避免不安全食品的危害，保障公众身体健康和生命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不安全食品的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及其监督管理，适用本办法。  　　不安全食品是指食品安全法律法规规定禁止生产经营的食品以及其他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食品。  **第三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法承担食品安全第一责任人的义务，建立健全相关管理制度，收集、分析食品安全信息，依法履行不安全食品的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义务。  **第四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指导全国不安全食品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不安全食品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的监督管理工作。  **第五条**　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组织建立由医学、毒理、化学、食品、法律等相关领域专家组成的食品安全专家库，为不安全食品的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提供专业支持。  **第六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汇总分析全国不安全食品的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信息，根据食品安全风险因素，完善食品安全监督管理措施。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收集、分析和处理本行政区域不安全食品的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信息，监督食品生产经营者落实主体责任。  **第七条**　鼓励和支持食品行业协会加强行业自律，制定行业规范，引导和促进食品生产经营者依法履行不安全食品的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义务。  　　鼓励和支持公众对不安全食品的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等活动进行社会监督。  **第二章　停止生产经营**  **第八条**　食品生产经营者发现其生产经营的食品属于不安全食品的，应当立即停止生产经营，采取通知或者公告的方式告知相关食品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消费者停止食用，并采取必要的措施防控食品安全风险。  　　食品生产经营者未依法停止生产经营不安全食品的，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责令其停止生产经营不安全食品。  **第九条**食品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食品经营柜台的出租者、食品展销会的举办者发现食品经营者经营的食品属于不安全食品的，应当及时采取有效措施，确保相关经营者停止经营不安全食品。  **第十条**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发现网络食品经营者经营的食品属于不安全食品的，应当依法采取停止网络交易平台服务等措施，确保网络食品经营者停止经营不安全食品。  **第十一条**食品生产经营者生产经营的不安全食品未销售给消费者，尚处于其他生产经营者控制中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追回不安全食品，并采取必要措施消除风险。  **第三章　召　回**  **第十二条**　食品生产者通过自检自查、公众投诉举报、经营者和监督管理部门告知等方式知悉其生产经营的食品属于不安全食品的，应当主动召回。  　　食品生产者应当主动召回不安全食品而没有主动召回的，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责令其召回。  **第十三条**　根据食品安全风险的严重和紧急程度，食品召回分为三级：  　　（一）一级召回：食用后已经或者可能导致严重健康损害甚至死亡的，食品生产者应当在知悉食品安全风险后24小时内启动召回，并向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召回计划。  　　（二）二级召回：食用后已经或者可能导致一般健康损害，食品生产者应当在知悉食品安全风险后48小时内启动召回，并向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召回计划。  　　（三）三级召回：标签、标识存在虚假标注的食品，食品生产者应当在知悉食品安全风险后72小时内启动召回，并向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召回计划。标签、标识存在瑕疵，食用后不会造成健康损害的食品，食品生产者应当改正，可以自愿召回。  **第十四条**　食品生产者应当按照召回计划召回不安全食品。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收到食品生产者的召回计划后，必要时可以组织专家对召回计划进行评估。评估结论认为召回计划应当修改的，食品生产者应当立即修改，并按照修改后的召回计划实施召回。  **第十五条**　食品召回计划应当包括下列内容：  　　（一）食品生产者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具体负责人、联系方式等基本情况；  　　（二）食品名称、商标、规格、生产日期、批次、数量以及召回的区域范围；  　　（三）召回原因及危害后果；  　　（四）召回等级、流程及时限；  　　（五）召回通知或者公告的内容及发布方式；  　　（六）相关食品生产经营者的义务和责任；  　　（七）召回食品的处置措施、费用承担情况；  　　（八）召回的预期效果。  **第十六条**　食品召回公告应当包括下列内容：  　　（一）食品生产者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具体负责人、联系电话、电子邮箱等；  　　（二）食品名称、商标、规格、生产日期、批次等；  　　（三）召回原因、等级、起止日期、区域范围；  　　（四）相关食品生产经营者的义务和消费者退货及赔偿的流程。  **第十七条**　不安全食品在本省、自治区、直辖市销售的，食品召回公告应当在省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网站和省级主要媒体上发布。省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网站发布的召回公告应当与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网站链接。  　　不安全食品在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销售的，食品召回公告应当在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网站和中央主要媒体上发布。  **第十八条**　实施一级召回的，食品生产者应当自公告发布之日起10个工作日内完成召回工作。  　　实施二级召回的，食品生产者应当自公告发布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召回工作。  　　实施三级召回的，食品生产者应当自公告发布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召回工作。  　　情况复杂的，经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同意，食品生产者可以适当延长召回时间并公布。  **第十九条**食品经营者知悉食品生产者召回不安全食品后，应当立即采取停止购进、销售，封存不安全食品，在经营场所醒目位置张贴生产者发布的召回公告等措施，配合食品生产者开展召回工作。  **第二十条**食品经营者对因自身原因所导致的不安全食品，应当根据法律法规的规定在其经营的范围内主动召回。  　　食品经营者召回不安全食品应当告知供货商。供货商应当及时告知生产者。  　　食品经营者在召回通知或者公告中应当特别注明系因其自身的原因导致食品出现不安全问题。  **第二十一条**　因生产者无法确定、破产等原因无法召回不安全食品的，食品经营者应当在其经营的范围内主动召回不安全食品。  **第二十二条**　食品经营者召回不安全食品的程序，参照食品生产者召回不安全食品的相关规定处理。  **第四章　处　置**  **第二十三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据法律法规的规定，对因停止生产经营、召回等原因退出市场的不安全食品采取补救、无害化处理、销毁等处置措施。  　　食品生产经营者未依法处置不安全食品的，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责令其依法处置不安全食品。  **第二十四条**　对违法添加非食用物质、腐败变质、病死畜禽等严重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的不安全食品，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就地销毁。  　　不具备就地销毁条件的，可由不安全食品生产经营者集中销毁处理。食品生产经营者在集中销毁处理前，应当向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第二十五条**　对因标签、标识等不符合食品安全标准而被召回的食品，食品生产者可以在采取补救措施且能保证食品安全的情况下继续销售，销售时应当向消费者明示补救措施。  **第二十六条**　对不安全食品进行无害化处理，能够实现资源循环利用的，食品生产经营者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处理。  **第二十七条**　食品生产经营者对不安全食品处置方式不能确定的，应当组织相关专家进行评估，并根据评估意见进行处置。  **第二十八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如实记录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不安全食品的名称、商标、规格、生产日期、批次、数量等内容。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五章　监督管理**  **第二十九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不安全食品的，应当通知相关食品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或者召回，采取相关措施消除食品安全风险。  **第三十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食品生产经营者生产经营的食品可能属于不安全食品的，可以开展调查分析，相关食品生产经营者应当积极协助。  **第三十一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对食品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不安全食品情况进行现场监督检查。  **第三十二条**　食品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的不安全食品存在较大风险的，应当在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不安全食品结束后5个工作日内向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书面报告情况。  **第三十三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要求食品生产经营者定期或者不定期报告不安全食品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情况。  **第三十四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对食品生产经营者提交的不安全食品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报告进行评价。  　　评价结论认为食品生产经营者采取的措施不足以控制食品安全风险的，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责令食品生产经营者采取更为有效的措施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不安全食品。  **第三十五条**　为预防和控制食品安全风险，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发布预警信息，要求相关食品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不安全食品，提示消费者停止食用不安全食品。  **第三十六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将不安全食品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情况记入食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  **第六章　法律责任**  **第三十七条**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有关不安全食品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的规定，食品安全法律法规有规定的，依照相关规定处理。  **第三十八条**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第八条第一款、第十二条第一款、第十三条、第十四条、第二十条第一款、第二十一条、第二十三条第一款、第二十四条第一款的规定，不立即停止生产经营、不主动召回、不按规定时限启动召回、不按照召回计划召回不安全食品或者不按照规定处置不安全食品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并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三十九条**　食品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九条的规定，不配合食品生产者召回不安全食品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并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条**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三条、第二十四条第二款、第三十二条的规定，未按规定履行相关报告义务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一条**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三条第二款的规定，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食品生产经营者依法处置不安全食品，食品生产经营者拒绝或者拖延履行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并处二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二条**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八条的规定，未按规定记录保存不安全食品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情况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三条**　食品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不安全食品，不免除其依法应当承担的其他法律责任。  　　食品生产经营者主动采取停止生产经营、召回和处置不安全食品措施，消除或者减轻危害后果的，依法从轻或者减轻处罚；违法情节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不予行政处罚。  **第四十四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不依法履行本办法规定的职责，造成不良后果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的有关规定，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  **第七章　附　则**  **第四十五条**　本办法适用于食品、食品添加剂和保健食品。  　　食品生产经营者对进入批发、零售市场或者生产加工企业后的食用农产品的停止经营、召回和处置，参照本办法执行。  **第四十六条**　本办法自2015年9月1日起施行。 |